경조금 지급 규정

주식회사 핑거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핑거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급대상)

경조금의 지급대상은 취업규칙의 채용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 3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.

제 3 조 (지급종류)

경조금의 종류는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한다.

제 4 조 (축의금 지급기준)

축의금 및 화환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1호에 따른다.

제 5 조 (조의금 지급기준)

조의금 및 조화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2호에 따른다.

제 6 조 (동일사유)

동일한 사유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.

제 7 조 (지급방법)

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인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유족지급)

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배우자 > 자녀 > 부모 > 손자 > 조부모 > 형제자매 순위에 따른다.

제 9 조 (지급제한)

회사의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기간소멸)

이 규정에서 정한 경조금의 신청기간은 경조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며,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 단, 육아휴직자는 복직 후 3개월 이후에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신청절차)

이 규정에서 정한 경조금은 본인의 신청으로 소속 부서장 확인과 최종결재권자 승인 후 지급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. 단 본인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원이 대리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별표 1 호

축의금 지급 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 항 목	축의금	화환	비교
본인결혼	500,000	100,000	
자녀결혼	500,000	100,000	
본인/배우자 회갑	500,000	100,000	꽃바구니
본인/배우자 출산	200,000	100,000	과일바구니
본인/배우자 부모 칠순 or 팔순	200,000	-	칠순 or 팔순 중
			한가지 선택 지급
본인/배우자 형제자매 결혼	100,000	ı	
본인생일	50,000	ı	상품권, 신청없이 지급
본인결혼기념일	50,000	_	상품권, 신청없이 지급

별표 2 호

조의금 지급 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 항 목	조의금	조화	비교
본인/배우자 사망	1,000,000	100,000	대표이사의 승인으로
			추가 지급할 수 있음.
자녀사망	500,000	100,000	
본인/배우자 부모사망	500,000	100,000	
본인/배우자 형제자매 사망	300,000	_	
본인/배우자 (외)조부모 사망	200,000	_	

● 장례물품 별도 지원